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1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5월12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인용)

제안이유

-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(2003. 8. 11, 조례 제1965호)으로 문화예술과의 국 소속이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재단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함. (안 제8조제2항제5호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천문화재단의 소속 국이 변경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요?</p>	<p>○ 네, 그렇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9 호
의결 연월일	2004. 5. 17 (제112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(2003. 8. 11, 조례 제1965호)으로 문화예술과의 국 소속이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재단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함. (안 제8조제2항제5호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시 문화재단업무담당국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이사회 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이사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부천시 복지환경국장</u>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8조(이사회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시 문화재단업무담당국장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